

『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고,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- 교통안전교육 등(안 제9조)
- 교통지도 등(안 제10조)
-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안전법」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」은

- 관련법에서 위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交通安全교육, 교통지도와交通安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
- 향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등 재정지원 준비사항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